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25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송재봉 · 허성무 · 김문수
한준호 · 이광희 · 이연희
민병덕 · 이수진 · 김남근
이용선 · 이주희 · 박정현
김우영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초기사업화 지원금과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등 지원책을 마련함.

아울러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가진 창업기업과 공급망 상의 전후방 연계 기업들을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지정·육성하고자 함.

이에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망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후테크 산업육성과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을 통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탈탄소 에너지원 중심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아울러 기후테크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기업 육성 업무가 기후테크 분야별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기후테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기반 혁신기업 발굴과 규제 개선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기후테크기업의 제품·서비스 및 보유한 기술이 창출하는 기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위해 이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산정의 적정성·실현가능성·검증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도록 하며, 환수 및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사. 기후대응기금 등 특별회계·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테크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며, 금융지원, 세제지원,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수요창출 시책을 통하여 기술개발 단계에서 시장 확산 단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기준·요건 부재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도록 하며, 복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증 및 사업화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테크 산업육성과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을 통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탈탄소 에너지원 중심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및 이상기후 적응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의 순환경제기술·서비스다.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이상기후 적응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후테크 산업”이란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혁신기업”이란 기후테크를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기후테크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

4. “기후성과”란 기후테크기업이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기후테크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후 적응에 대한 기여도 및 이와 관련된 잠재적 효과를 말한다.

5. “기후가치평가”란 기후테크기업의 기후성과를 평가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기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혁신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27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또는 제31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심의위원회가 지정한 관계 법령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제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달리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장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후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후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혁신기업의 창업, 실증·사업화 지원 및 지원사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일자리 연계에 관한 사항

6. 기후테크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테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생태계의 구성과 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기후테크에 관한 현황 및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후테크기업 및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의 조사·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기업 육성 업무가 기후테크 분야별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기후테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기술·산업 정책 사례 등 기후테크 현황조사
2. 기후테크기업 관련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 기후테크기업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4.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관련한 지원
5. 초기 사업화 지원금 심사 지원 등 혁신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

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기후테크기업의 기후성과 측정·관리를 위한 기후가치평가의 개발 및 운용
 7. 기후테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발굴에 관한 사업
 8. 기후테크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9. 그 밖에 기후테크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기후테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기후테크 관련 현황조사
2.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이행점검 및 분석 지원
3. 기후테크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지원
4. 지역 내 기후테크기업의 기후성과 측정 및 관리 지원
5. 제26조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27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31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제33조에 따른 일괄처리의 신청과 사후관리 지원
6. 지역의 혁신기업 육성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의 기후테크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후가치평가에 대한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기후테크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갖는 분야별 기후성과의 산정을 위한 기후가치평가 제도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테크기업은 보유한 기후테크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갖는 기후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⑤ 평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신청,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제1절 혁신기업 발굴 지원

제10조(창업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기후테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4.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화 지원 및 심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화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혁신기업은 사업화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하

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받으려는 혁신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의 환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기후테크 전략사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의 기술 선점을 위하여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기후테크 전략사업(이하 “전략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다.

② 전략사업은 핵심 기술적 수단을 보유한 기업과 해당 기술적 수단의 구현·확산에 필수적인 전후방 연계 기업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구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략사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 전략사업의 초기 상용화를 위한 현장 실증 및 운영실적 확보 지원
3. 신기술 도입 및 공정 전환에 따르는 사업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보증 지원
4.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협업을 위한 정보 공유 기반의 조성
5. 신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용 책임보험 가입 및 컨설팅 지원 등
6. 제27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등 혁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략사업의 지정 기준,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실적
2.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수된 지원금의 실적과 환수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 절차와 비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혁신기업 성장 지원

제15조(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6.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혁신기업을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업개요
2. 조합원의 구성 및 출자계획
3. 투자대상 혁신기업의 선정기준 및 투자계획
4. 수익의 배분계획
5.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관계에 관하여는 「상법」 중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금융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협약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 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혁신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개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초기 수요창출) ① 정부는 혁신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그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기업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2.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

화촉진기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6.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제3절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테크 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업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기후테크산업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후테크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22조에 따른 특성화 대학, 특성화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2. 제1호의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 지원

3. 기후테크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제22조(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등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특성화 대학원(이하 “특성화 대학 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

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특성화 대학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테크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후테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석
4. 기후테크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
5. 기후테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자문 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제24조(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27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31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후테크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25조제7항에 따라 기후테크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2. 기후테크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3. 기후테크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후테크 임시허가·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

람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1. 심의 대상이 되는 기후테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제27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31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기후테크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⑧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효율적

으로 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을 정하거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후테크 옴부즈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테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둔다.

②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기후테크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기후테크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2. 기후테크와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책자금 운영기관에 대한 기후테크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4. 그 밖에 기후테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⑦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심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실증 또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⑥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그 내용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기후테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 및 제품·서비스(이하 “기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기후테크 산업생태계를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기술 등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기술 등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 등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자는 사업 수행 전에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기후테크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4. 실증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 등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
원회의 심의. 이 경우 소관기관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기술 등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장기간의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27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27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실증하려는 자는 기술 등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7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실증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증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적용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실증특례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프로젝트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등에 대해 제31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실증특례의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임시허가) ①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기후테크 사업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기술 등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기술 등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프로젝트 수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프로젝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프로젝트 실시계획서

2. 해당 기술 등의 파급력 및 이용자의 편익

3. 기술 등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기술 등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기술 등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후테크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일괄처리) ① 기후테크기업은 기후테크를 활용한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허가 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 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 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위한 심

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 심사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테크 기업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기후테크기업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실적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
2. 제13조에 따라 전략사업을 수행하는 자

3. 제15조에 따른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4. 특성화 대학 등

5. 제31조에 따라 기후테크 사업 임시허가를 받은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후테크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성화 대학 등의 지정 취소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지원센터 등 기후테크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담기관과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2.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3.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25조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기구 임직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후테크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 기후테크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후테크의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기후
가치평가와 평가기관,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기후테크 음
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벤처투자 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벤처투자조합 중 기후테크 관련
투자를 주로 하는 조합은 제15조에 따른 기후테크 전문투자조합으
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